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,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종복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29호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
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현행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
3층이하로서 12m 이하로 되어 있으나,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
소규모재건축 사업 시행 시 심의를 거쳐
최대 5층 이하로서 20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중첩하여
규제함으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의
지형이나 건축기술 활용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 가능성을
제한하는바,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.

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 중
층수(5층) 제한을 삭제하고, 20m 이하까지로 높이를
제한하고자 합니다.

자연경관지구 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
위해 개정조례안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
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